

# 住宅建設基準에 關한制定

建設部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1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依據 住宅建設에 使用되는 마감材料를 品質과 價格面에서 平準化하고, 規格화된 窓戶의 使用를 義務化시키는 등 適正한 施設을 갖춘 住宅을 建設供給케 함으로서 住宅建設 業者間의 建築工事費의 隔差를 줄이고, 지나치게 高級이거나 低質인 住宅을 建設할 수 없도록 하기 爲한 措置로서 「住宅建設基準에 關한 規則」을 制定, 1979년 4월 21일 자로 公布하여 1個月後施行토록 하였다.

同規則의 主要骨子を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1. 内部마감 材料의 平準化(第11條)

專用面積 25坪以下の 住宅은 各室 部位別로 2-3種의 材料中에서 選択하여 使用하도록 義務化

※ 規則 別表 4 參照

2. 窓門 및 落水口(Roof Drain)은 建設部長官이 定하여 公告하는 規格대로 製作된 것만을 使用토록 義務化 함으로서 大量工場生産이 可能(價格의 低廉化誘導)토록 함. (第10條)

※ 同規則 公布 6個月 經過後부터 適用

## 3. 熱量使用計器(Calorie meter)設置義務化(第12條)

現在까지 中央集中式 暖房方式으로 建築된 아파트는 暖房面積에 따라 暖房費를 負擔하고 있으므로 油類節約에 對하여 入住者들은 無關心하거나 더우면 窓門을 열어놓는例까지 있는 것이 現實情이므로 電氣料 水道料의 경우와 같이 熱量을 使用한 만큼 暖房費를 負擔하게 함으로서 油類를 節約하기 爲하여 中央集中式 暖房方式으로 建築하는 共同住宅에는 世帶別로 熱量使用計器를 設置토록 義務化하였 음.

※ 同規則公布 6月 經過後부터 適用

4. 專用面積 35坪以下の 住宅에는 浴室 1個만을 設置토록 規制(第5條 第2項)

5. 複道 및 階段의 有效幅 및 段높이 등을 適正水準으로 建築토록 規制(第6條)

※ 規則 別表 2 參照

## 6. 室의 크기規制(第5條 第1項)

室의 面積이 지나치게 넓거나 좁게 建築할 수 없도록함.

例: 침실 → 最小 5.7 m<sup>2</sup> 最大: 20m<sup>2</sup>

※ 規則別表 1 參照

7. 規則中 第2乃至 第4條 第7條 및 第9條는 現行 住宅建設促進法 施行規則에 規定되었던 것을 一部 補完한 것임.

添付 2. 住宅建設基準에 關한 規則 (기 송부)

## 1. 熱使用計器設置에 따른 油類節約效果

첨부 1

熱使用計器設置에 따른 油類節約效果(방카C 油基準)

1. 坪當 1日 暖房油類所要量: 0.549~0.66 l

※ 平均: 0.63 l.....(A)

2. 計器設置後 坪當 1日 油類所要量

○ 20% 節約 推定時: 0.504 l.....(A)

3. 坪當 1日 節約量(A-B): 0.126 l

4. 年間節約可能 油類量(30坪 1世帶, 4個月 暖房基準)

○ 油類量: 453.6 l (252드럼)

○ 節約金額: 25765원.

※ l당 56.80원 基準

5. 年間計器 35,000台를 設置할 경우

○ 年間節約可能油類量: 15,876千 l

○ " 金額: 901,756千원